##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06 발의연월일: 2022. 6. 14.

발 의 자:정태호·민병덕·홍성국

윤준병 · 김민철 · 이성만

이수진 • 강선우 • 장철민

임호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물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이후 원재료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주된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또는 노무비가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탁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과 같은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조정 협의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납품대금 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

중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원재료의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조정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않고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발급하는 약정서의 내용에 주요 원료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상승할 경우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 정서를 작성하여 위·수탁 기업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여야 함(안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각각 신설).
- 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에 주요 원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제22조제7항).
- 다.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 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과 주요 원료 가격 상승 전에 결정된 납품대금 금액의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제43조제5항 신설).

#### 법률 제 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탁의 내용
- 2. 납품대금의 금액
- 3.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료
- 4. 주요 원료 가격의 상승(100분의 3 이상 상승하였을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
- 5. 대금의 지급 방법
- 6. 지급기일
- 7. 검사 방법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원료의 종류, 주요 원료 가격의 상승에 관한 기준,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작성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탁기업은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에 주요 원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를 "제5항까지에" 로 한다.

⑤ 제22조제7항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대금 금액의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	
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	
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u>.</u>
<u>사항을 적은</u> 약정서를 그 수탁	
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u>1. 위탁의 내용</u>
<u>&lt;신 설&gt;</u>	2. 납품대금의 금액
<u>&lt;신 설&gt;</u>	3.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
	요 원료
<u> &lt;신 설&gt;</u>	4. 주요 원료 가격의 상승(100
	분의 3 이상 상승하였을 경
	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납품
	대금의 조정 방법
<u> &lt;신 설&gt;</u>	<u>5. 대금의 지급 방법</u>
<u> </u>	<u>6. 지급기일</u>
<u>&lt;신 설&gt;</u>	7. 검사 방법
<u>&lt;신 설&gt;</u>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 </u>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원료의
	종류, 주요 원료 가격의 상승에
	관한 기준, 납품대금의 조정 방

<신 설>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제43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신 설>

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 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 용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작 성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게 그 사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탁기업은 납품대금을 지 급할 때에 주요 원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 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2조제7항에 따른 납품대 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 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 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 대금 금액의 차액의 2배에 상 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u>(5)</u>	ズ	∥1항부	- 터	제4	1항끼	<u>-지에</u>	따
른	J.	} 태료	는 t	개통	-령령	으로	정
하늯	=	바에	따	4	중소	벤처기	] 업
부건	앙 į	관이 투	브과	• 징	수힌	다.	

<u>6</u>	<u>제5항까지에</u>